의 안 번 호	제51호
의결 연월일	2020. 5. 18.

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5월 08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0년 5월 08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0년 5월 18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회계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(원안가결, 2018년 12월 21일)하였으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(취득) 사유가 발생하여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[일반회계]

○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변경

· 당초 : 연산면 청동리 127-27외 3필지 3,886㎡(토지), 2,614㎡(건물)

· 변경 : 연산면 청동리 127-27외 5필지 5,280㎡(토지), 2,614㎡(건물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